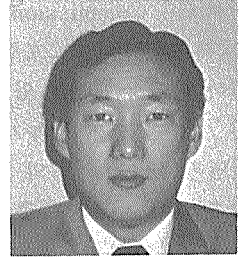


反덤핑 調査에 對한 理解와 對策



(株)金星社 海外法制室 部長 / 趙 賢 翼

1. 서 언

요즈음 국제 통상문제는 한 마디로 「무역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심각한 양상을 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및 자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의 해결책의 하나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대국인 미국과 EC는 가장 직접적인 수입규제 수단인 반덤핑(Anti-Dumping) 조사를 빈번히 실시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수출주도형 경제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한국 가전제품의 경우 1983년도의 미국향 Color TV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실시된 이후 반덤핑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수출 정책의 중요 이슈(Issue)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死活問題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케이스를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문답형

반덤핑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우선 반덤핑조사에 대한 기본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덤핑 마진을 인하와 같은 단기적 조사 수감전략과 해외 현지공장 운영과 같은 장기전략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식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반덤핑 조사에 대한 이해

가. 반덤핑 조사는 어떤 근거로 실시되는가?

세계무역의 기본정신은 자유무역주의이다. 자유무역 정신은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가간의 교역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모든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간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무질서와 혼돈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 무역정신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GATT에서도 반덤핑 법규(Anti-Dumping Code)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원래 반덤핑 조사 제도는 GATT 규정 이전에 각 나라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국가별로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며 GATT에서는 각 나라의 관행을 존중하는 한편 무분별한 반덤핑 조사의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명문화하였다.

미국의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에 의하면 미국내 이해관계자의 제소에 의하여 제소가 이루어지면 덤핑 마진(Dumping Margin)이 존재

하고 이로 인하여 미국내 산업에 피해(Injury)를 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제반 조사는 미국의 경우는 미국 상무성(DOC)이, EC의 경우는 EC 집행위원회(EC Commission)가 캐나다의 경우는 캐나다 국세청(DNR)이, 호주의 경우는 호주 관세청이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나. 반덤핑 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반덤핑 관세는 일종의 세금이다. 따라서 미국의 법에 의하여 한국의 수출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 업체가 반덤핑 조사를 받게 되면 수출업자인 한국업체가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반덤핑 관세는 미국의 세관이 덤핑 물건(Dumped Goods)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사람에게 부과하게 된다.

다. 반덤핑 관세는 왜 무서운가?

일단 수입업자(Buyer)가 반덤핑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내로 수입을 해야될 입장이 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반덤핑 관세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 경우 수입업자는 추가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반덤핑 관세에 상응하는 가격인하를 요청하게 된다.

수출업자의 경우 가격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선을 전환하게 되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격인하는 향후 조사시에 더 많은 덤핑 마진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하나의 악순환(Vicious Cycle)이 거듭되게 되어 더 이상 수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게 된다. 즉 「반덤핑 관세 부과→가격 인하→고율의 덤핑 마진 유발→수출 불가」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덤핑 조사는 수출 주도형 기업활동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이다.

라. 덤핑 마진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덤핑 마진은 공정한 가격(Fair Market Value, Normal Value)과 수출가격의 차이이다. 공정한 가격으로는 수출국의 내수가격이 주로 이용되며 내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3국 수출가격이나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공정가격으로 이용하게 된다.

단순한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 (즉 Dumping Margin)를 수출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덤핑 마진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에 많은 조정(Adjustment)을 하여야 되는바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text{덤핑 마진율}(\%) = \frac{(\text{조정후 내수가격} - \text{조정후 수출가격})}{\text{조정후 수출가격}} \times 100$$

마. 어떤 비용들이 조정되는가?

수출과 내수는 판매환경, 유통경로, 상품의 모양이 다르다. 조정(Adjustment)의 기본 내용은 바로 이러한 차이점을 제거하여 비교 가능한 동일 수준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간접세 등과 같은 판매환경 차이를 조정하고 수출과 내수를 모두 공장을 막 벗어나는 수준(Ex-Factory Level)으로 놓고 비교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직접판매비(운반비, 광고선전비, 판촉비, Service 비용 등)와 일정한 한도의 간접비를 수출과 내수가격에서 각각 차감 조정한 후 상품의 모양차이(Difference in Merchandise)를 조정하고 관세환급을 수출가격에 가산하여 「조정된 내수가격」과 「조정된 수출가격」을 형성시킨후 이들을 상호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계산하게 된다.

바. 미국내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판매가격은 그 대로 인정하는가?

미국내 현지 투자법인에 대한 판매가격은 「관계회사(Related Party)」에 대한 가격이라 하여 이를 무시하고 미국내의 「제3자(Unrelated Party)」에 판매한 가격(Exporter's Sales Price, ESP)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차감하게 된다.

이때 비용조정은 현지판매법인 비용을 포함한 공장도(Ex-Factory)이후의 모든 발생비용을 독립된 제3자(Unrelated Party)에 대한 판매가격으로부터 차감하게 된다.

이는 관계회사간의 거래는 일종의 내부자 거래로서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반덤핑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제3자에 대한 가격을 출

발점으로 조사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사.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란 무엇인가?

반덤핑 조사는 보통 1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진다. 조사 절차상 조사기관 (미국의 경우 상무성, DOC)은 조사완료 후 자체계산 결과를 예비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바, 이를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이라 한다.

이는 최종판정(Final Results)을 발표하기 위한 그야말로 예비적 결정이라는 의미 이외에는 전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최초의 조사시에는 예비판정때부터 반덤핑 관세의 예치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예비판정은 조사기관의 잠정적인 계산에 대한 오류나 이의사항(Objection)에 대하여 제조자와 피제조자로부터 코멘트(Comments)를 받기 위한 절차인 것이다.

최종판정은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예치금과 실제율과의 차이를 정산(Liquidation)하는 효력과 향후 통관분에 대한 예치율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갖게 된다.

아. 「예치」와 「정산」이란 무엇인가?

예치(Deposit)란 통관시점에 가장 최근의 최종판정을(Final Results)에 의하여 반덤핑 관세를 통관시에 미국 세관에 예납하는 것이며, 정산(Liquidation)이란 해당 조사기간에 대한 최종판정에 의하여 예치금의 환불(Refund) 또는 추가납부(Additional Payment)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8년 미국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10%의 반덤핑 관세를 통관시에 예치하였다면 1988년 기간에 대한 조사가 1989년 중에 실시되고 최종판정률이 9월 1일자로 6%로 발표되었다면 1988년 통관시에 예치시킨 금액중 4%(10% -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됨과 아울러 새로운 최종판정률이 발표되는 1989년 9월 1일부터는 예치율도 6%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자.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현안문제는?

최근 원화 평가절상에 따른 환율 인하는 내수가격의 상대적 인상을 초래하여 덤핑 마진을 높이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D 조사 강화를 위한 미국 상무성의 조사 정책 변화(현지공장 규제, 우회수출 규제 강화 등), 미 의회의 보호주의적인 무역

입법 확정 등은 반덤핑 조사시에 수출업자에게 직접, 간접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3.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책

반덤핑 조사에 대한 기본대책은 무엇인가?

가. 가격정책

한 마디로 덤핑 마진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 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된다. 따라서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내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가격격차를 줄여야 한다. 내수가격 인하보다는 수출가격 인상이 한층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갖는 경직성과 국제적 경쟁력 문제 때문에 수출가격 인상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내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덤핑 마진을 줄이게 되는데 이에 한계가 있다. 내수가격이 총원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공정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수가격의 인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이 뒤따라지 않으면 안된다.

수출제품에 대한 고품질(High Quality), 고가격(High Price)유지 및 원가절감(Cost Down)에 의한 내수 가격인하는 반덤핑 문제해결을 위한 근간이 됨을 먼저 숙지하여야 한다.

나. 비용정책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덤핑 마진 계산을 위해서는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조정하게 된다. 내수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낮출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차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출비용의 경우는 가능한 수출가격에서 적게 차감 조정되어야 하므로 수출비용은 적을수록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 조사 수감 대책

반덤핑 조사는 「미국인이 제조하여, 미국인 조사관이 조사하고, 미국의 법에 의하여 미국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피조사자에 불과한 것이다. 반덤핑 조사에서 뿐 아니라 모든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는 성실히 설득력있게 답변하는 것만이 최선의 수감자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조사와 관련된 전부분이 기동성 있는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자료가 회계기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특히 재정부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 된다.

라. 장기적 대책

비록 단기적으로 덤핑 마진(Dumping Margin)이 줄어드는 경우라도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가 존재하거나 피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반덤핑 조사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수입국과의 경제적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생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공생공존의 정책의 하나가 수입국내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고용증대 효과를 통하여 수입국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국은 반덤핑 조사 문제를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입국 뿐만 아니라 반덤핑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제3국 공장을 운영 함으로써 반덤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마. 홍보 활동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은 수입국내의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불 때 민간기업과 정부 및 관련기관이 합심하여 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호혜적인 수입개방 등을 통하여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반덤핑 제소나 보호무역 입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비록 반덤핑 조사가 정식으로 공시되어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사기관에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망된다.

4. 맺음말

반덤핑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길은 우선 반덤핑 조사에 대한 기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덤핑 마진을 인하와 같은 단기적 조사 수감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해외 현지공장 운영, 수출시장 다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